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합53296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티스

담당변호사 이진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서은미

변 론 종 결 2023. 9. 1.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350,585원 및 그 중,
가.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부터, 454,667,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7.부터,
332,683,585원에 대하여는 2021. 5. 1.부터 각 2022. 4. 1.까지는 연 6%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부터 2023. 9. 22.까지는 연 6%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고 한다)는 철강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C는 2020. 2. 17. E 유한회사에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 G(중복)호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충남 예산군 H 공장용지 8927.8㎡의 매수를 위탁하면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454,667,000원을 지급하고, 2020. 3. 25. 원고와 사이에 'C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반환받을 454,667,000원을 즉시 원고에게 미수금으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경매절차에서 위 공장용지는 주식회사 I에 매각되었고 2020. 9. 16. 배당기일이 진행되었다.

다. 피고의 처 J은 2017. 9. 15. 충남 홍성군 K 전 966㎡(이하 'K리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9. 5. 21. C의 대표자 사내이사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2020. 4. 9. C의 원고에 대한 일부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K리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L은 2020. 4. 16. C 명의로 원고에게 '2020. 3. 31. 현재 자재대금 잔액 1,077,350,585원에 대하여, E 계약금 454,667,000원(E 유한회사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을 금액)은 배당기일에, K리 담보권 200,000,000원(담보로 제공된 K리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금액)은 소유권이전 시에, N 외 미수채권 90,000,000원(C가 다른 업체로부터 지급받을 미수채권액)은 2020. 4. 30.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자재대금 332,683,585원은 2020. 5. 31.부터 12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대금 변제이행서'(이하 '이 사건 변제이행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변제이행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K리 토지의 반환금 및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원고에게 2020. 11. 27. 1,000만 원, 2021. 2. 27. 2,000만 원, 2022. 3. 18. 1억 원, 2022. 3. 21.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 3. 31. K리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의 모 P, 처 J은 원고에게 K리 토지의 반환금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2. 7. 31. 1,000만 원, 2022. 8. 31.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변제이행서에 의하여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1,077,350,585원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97,350,585원(= 1,077,350,585원 - K리 토지 관련 지급금 180,000,000원) 및 그 중 'N 외 미수채권' 관련 9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0. 5. 1.부터, 'E 계약금' 관련 454,667,000원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 G(중복)호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 다음 날인 2020. 9. 17.부터, 332,683,585원에 대하여는 각 분할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4.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K리 담보권' 관련 미지급금 20,000,000원(= 200,000,000원 -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O에게 K리 토지를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날인 2022. 4.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K리

담보권 관련 미지급금에 관하여 K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22. 3. 18.임을 전제로 2022. 3. 1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22. 3. 31.인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통정허위표시 항변

C의 대표자 L은 C의 100% 주주로서 C의 회계를 전담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자 M은 L과 10년 이상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로서 L이 C의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피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변제이행서에 의한 피고의 연대보증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기망 또는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 항변

이 사건 변제이행서 작성 당시 C는 주채무자로서 변제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변제이행서 작성 직후 폐업하였다. 피고로서는 C의 재정상태를 알았다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원고와 L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은 기망 또는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L이 2020. 2. 14. 당시 C의 발행주식 17,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L이 C의 OTP 카드를 관리하는 등 회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변제이행서 작성 이전부터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변제이행서 작성 후 원고에게 K리 토지의 반환금 및 C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통정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망 또는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 항변에 관한 판단

증인 L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예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변제이행서 작성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 후 2020. 6. 30. 폐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C의 설립 및 운영 경위, 피고의 연대보증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주채무자인 C의 재정상태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후, 판사 이지웅, 판사 인자한